

25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전인식
서 기 신현철

1. 조직

- 위원장 : 전인식
- 회 계 : 이병우
- 위 원 : 정해영
- 서 기 : 신현철
- 총 무 : 박세영

2. 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9. 11. 12(화) 10:45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다.
 - 위원장 전인식 목사 · 서 기 신현철 목사 · 회 계 이병우 장로
 - 총 무 박세영 목사 · 위 원 정해영 장로
 - ② 차기 회의를 아래와 같이 11월 26일(화)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 가. 중부노회 양측의 대표(노회장 포함 3인)를 소환하여 심의하기로 하다.
 - 11:00 최규식 목사 측, 13:00 김용제 목사 측
 - 나. 중부노회 양측의 대표에게 아래를 지참하여 출석토록 하다.
 - a. 사건의 경과 개요(서면제출)
 - b. 해당 노회의 요구사항(서면제출)
 - c. 해당 노회의 노회록 원본
 - d. 해당 노회의 직인
 - e. 참석자 신분증
 - ③ 교회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헌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19. 11. 26(화)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최규식 목사 측 및 김용제 목사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으니, 양 측은 위원회의 지도를 이행, 준수하도록 약속을 받다.



- ① 본 총회결의에 순복하여 본 위원회를 상대로 어떠한 사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② 조사처리의 공정성을 위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교회 또는 사역지에서 어떠한 시위나 언론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 ③ 본 위원회의 중재권을 인정하고 위의 서약을 위반할 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 ④ 본 위원회의 지도와 판결에 전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③ 최규식 목사 측(11:00)과 김용제 목사 측(13:00)으로부터 각각 “경과보고” 및 “요청사항”을 받고, 양 측에 추가 자료를 다음 주(12월2일(월))까지 제출토록 지시하다.

최규식 목사 측	김용제 목사 측
1. 현재 진행 중인 사회법정 고소 내용	1. 현재 진행 중인 사회법정 고소 내용
2. 중부노회 재산 현황	2. 중부노회 재산 현황
3. 노회원 명단(편목,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등)	3. 노회원 명단(편목,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등)
4. 중부노회 통장 입출금 내역	4. 당시 재판국장(윤익세 목사)의 최규식 목사 측과의 결탁 증빙자료(목격진술서)
	5. 혜린교회 주차장 매각관련 증거 자료

- ④ 양 측으로부터 각각 노회 직인 및 노회회의록 원본을 받되, 직인은 총회사무실에서 보관하기로 하고(사용 시 위원회의 허락(결의)), 노회회의록 원본은 총회직원이 복사하여 다시 돌려주기로 하다.
- ⑤ 조사처리를 위한 현재 상태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기로 하다.
 - 가. 총회전산망에 중부노회 임원 현황을 ‘조사처리 중’으로 표기하기로 하다.
 - 나. 중부노회의 모든 서류는 위원회의 허락(결의)을 받아 발급, 처리하기로 하다.
 - 다. 중부노회 명의로 발급되는 서류의 노회장은 양측 대표를 공동명의(최규식, 김용제)로 기재 하되, 직인은 분쟁 이전 총회에 보고된 것으로 날인하기로 하다.
 - 라. 이상의 사항을 총회기획행정국에 지시하여 그대로 시행케 하도록 하다.
- ⑥ 차기 회의는 12월 17일(화) 오전 11시에 갖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12. 17(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최규식 목사 측과 김용제 목사 측에서 각각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가. 양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법고소 건(민형사상 고소 고발 건)은 소송을 취하하고, 12월 31일(화)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 나. 중부노회 재산현황에 관하여 양측에서는 최근 3년간의 은행입출금 거래내역과 재정장부 사본을 12월 31일(화)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다.
- ③ 중부노회의 양측이 요청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가. 개별 교회의 요청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대로 서류를 발급하게 하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서류 요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게 하고, 중부노회 소속 교회에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경과 보고케 하기로 하다.
 - 나. 모든 문건은 총회사무국을 통해서만 접수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접수

하지 않기로 하다.

- ④ 중부노회 사건에 대한 날짜별 정리 문건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가. 본 위원회가 정리한 문건을 양측(최규식 측, 김용제 측)에 발송하고, 그 문건의 사실관계를 점검하여, 양측의 입장을 증거자료와 함께 12월 31일(화)까지 보고토록 하다.
 - 나. 사실관계 심의를 위한 자료 요청은 서기에게 일임하고,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중부노회 양측(최규식 측, 김용제 측)에 전달하여,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⑤ 차기 모임에 양측 대표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기로 하고, 3교회(혜린교회, 새하남교회, 산이리교회)에 대한 실사는 그 후에 처리하기로 하다.
- ⑥ 차기 모임은 2020년 1월 10일(금)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1. 10(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중부노회 양측에서 보내온 서류(a.고소고발 취하에 관한 문건, b.3년간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및 재정장부 사본, c.중부노회 사태의 날짜별 정리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 가. 양측이 고소고발은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양측이 합의를 따르도록 요청하였음을 확인하고,
 - 나. 양측의 3년간 재정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회계 이병우 장로 및 위원 정해영 장로에게 맡겨 검토 후 처리기로 하고,
 - 다. 중부노회 사태의 날짜별 정리는 보충하였으나 큰 틀에서 이전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다.
- ③ 김용제 목사 측(참석자: 김용제, 정순기, 김진수 목사)과 최규식 목사 측(참석자: 최규식, 이택규 목사)을 함께 소환하여 고소고발 건의 취하에 대한 합의를 권하였으나,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양측은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고소고발 취하의 건을 비롯한 노회재산 분할, 자격과 신분의 원상회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양측의 합법적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1월 30일까지 처리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기로 하다.
- ④ 중부노회 소속 3개 교회(혜린, 새하남, 산이리)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양측에 각각 요청하여 1월 20일(월)까지 총회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지시기로 하다.
- ⑤ 양측의 상호 고소고발 건 취하 및 분립을 위한 합의서 채택 등을 위해 양측 대표자 3인 및 담당 변호사와 함께 2020년 1월 31일(금) 오전 11시까지 소환기로 하다.
- ⑥ 잔무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⑦ 차기 모임은 2020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1. 31(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중부노회 양 측 재정 확인을 위해서
 - 가. 양 측의 은행거래내역확인서와



나. 세 교회(혜린, 산이리, 새하남)의 재정장부 원본과 은행거래내역확인서를 2월 10일(월)까지 제출토록 하다.

- ③ 김용제 목사 측에서 요청한 재직증명서(중부 제4341호) 발급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④ 중부노회 분립 시까지 노회 및 소속 교회의 행사 및 임직식 등을 불허하기로 하고, 양 측에 공문을 보내 지시하기로 하다.
- ⑤ 중부노회 양 측의 합의에 의거 2월 4일까지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를 허락지 않기로 하다.
- ⑥ 중부노회 산하 교회 총회증명서 발급 내역(2019년 9월 ~ 2020년 1월 9일)을 확인하다.
- ⑦ 차기 모임은 2월 7일(금) 오후 1시 및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20. 2. 7(금)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합의서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 가. 검찰에 소환되어 재판 중인 김용제 목사의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담당 검사에게는 "공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그리고 법원에는 "선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기로 하다.
 - 나. 최규식 목사 측에도 김용제 목사의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담당 검사에게는 "공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그리고 법원에는 "선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각 제출 요청하기로 하다.
 - 다. 상호비방 금지 합의를 철저히 지킬 것을 상기하고, 양 측은 언론사에 분란과 관련된 중부노회 기사를 속히 내릴 수 있도록 요청서 송부를 지시하기로 하다.
- ③ 분립된 노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김용제 목사 측은 '가칭 중앙노회'로, 최규식 목사 측은 '가칭 함흥노회'로 하기로 하되, '가칭 중앙노회'는 관서노회에 노회명칭 사용에 관해 문의 및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④ 분립 예비 및 노회와 관련하여 '가칭 중앙노회'는 3월 9일(월)에 하기로 하되, '가칭 함흥노회'는 추후에 날짜를 정해 보고하기로 하다.
- ⑤ 중부노회 산하 각 지교회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가칭 중앙노회' 또는 '가칭 함흥노회' 중 어느 노회로 소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속하기로 선택한 가칭 노회에 2월 24일(월)까지 공동의회록 사본을 제출 지시하기로 하다.
- ⑥ 가칭 양측 노회의 대표는 2월 25일(화)까지 노회분립을 위한 검토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케 하기로 하다.
 - 가. 분립노회 소집요청서
 - 나. 2월 24일까지 수령한 각 지교회 공동의회록 사본
 - 다. 소속 노회원 명부 및 교회 명부(조직, 미조직 구분)
 - 라. 임원 등 선거 절차
 - 마. 노회규칙 개정안
- ⑦ 분립 노회 시 가칭 양 노회의 목사 안수는 허락하기로 하다.
- ⑧ '가칭 함흥노회'에서 요청한 방영춘 목사의 김제노회로의 이명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⑨ 가칭 양측 노회의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요구는 취소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 세 교회(혜린, 산

이리, 새하남)의 장로들도 출석케 하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20. 2. 10(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세 교회(혜린, 산이리, 새하남)의 재정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받고, 각 교회의 현황에 대하여 청문 청취하다.
가.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 이상철 집사
나. 새하남교회: 박장근 목사, 최형석 목사, 최인규 장로
다. 산이리교회: 이수기 목사, 전영균 장로
- ③ 세 교회가 제출한 재정관련 자료에 대해 회계 이병우 장로에게 맡겨 세밀히 검토한 후 문제점을 차기 회의 때 요약 보고케 하기로 하다.
- ④ 양측 노회 대표 각 2인 및 세 교회 관련 쌍방 당사자들을 차기 회의 때 재 소환하기로 하다.
- ⑤ 차기 모임은 2월 18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20. 2. 18(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세 교회(혜린, 새하남, 산이리)의 재정에 대해 회계 이병우 장로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다.
- ③ 거여제일교회에 대한 답변서를 추인하되, 2월 24일(월)까지 공동의회결과를 보고케 하고, 제3의 노회로의 이명·이적은 제105회 총회에서 노회 분립이 허락할 때까지는 불허하기로 하다.
- ④ 이미 통보한대로 2월 24일(월)까지 노회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시행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직권으로 임의 배정키로 하다.
- ⑤ 중부노회 양측(가칭 중앙노회, 가칭 함흥노회)의 분립예배 및 분립 노회일정에 대해 가칭 함흥노회는 2월 28일(금) 오전 11시 초대중앙교회(경기 이천)에서의 분립예배와 3월 9일(월) 오전 11시 안산목양교회에서 분립 노회를, 가칭 중앙노회는 3월 9일(월) 오전 11시 대광교회(서울 장안동)에서 분립예배 및 분립 노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 ⑥ 산이리교회는 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소속 노회를 결정하여 지도받게 하기로 하다.(참석자 이수기 목사, 전영균 장로)
- ⑦ 새하남교회는 합의서(별지)를 작성하고 노회분립합의 정신(신분, 지위, 자격에 관하여 분쟁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으로 화합하기로 하다.(참석자 박장근 목사, 이희근 장로, 최형석 목사, 최인규 장로)
- ⑧ 혜린교회는 양측의 합의 또는 법적절차가 완료된 후 지교회의 결정으로 소속 노회를 정하여 지도받게 하기로 하다.(참석자 김낙주 목사, 이상철 집사)
- ⑨ 가칭 함흥노회의 분립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고, 순서자 연락은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사회: 서기 신현철 목사, 기도: 회계 이병우 장로, 성경봉독: 위원 정해영 장로



설교: 총회장 김종준 목사, 분립선포: 위원장 전인식 목사,
 격려사: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정치부장 함성익 목사,
 축사: 장로부총회장 윤선을 장로, 총회부서기 김한성 목사, 교육부장 서현수 목사
 축도: 총무 박세영 목사

- ⑩ 가칭 중앙노회가 요청하는 직인증명서(중부 제4342-1, 2, 3, 4, 5호), 대표자증명서(중부 제 4343-1, 2, 3, 4, 5호), 소속증명서(중부 제4344-1, 2, 3, 4, 5호), 재직증명서(중부 제 4345-1, 2, 3, 4, 5호)의 발급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⑪ 차기 모임은 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9) 제9차 회의

☞ 일 시 : 2020. 2. 25(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양 측에서 수령한 접수서류를 서기가 검토하기로 하고, 노회를 선택하지 않은 교회는 검토하여 임의 배정하기로 하다.
- ③ 21당회 요건을 양 측이 완수했으므로, 분립예배 및 노회를 합법적으로 하게 되다. 기존에 예정된 날짜는 연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 변경하기로 하다.
 가. 가칭 중앙노회: 3월 23일(월)
 나. 가칭 함흥노회: 4월 2일(목)
- ④ 공동의회록을 미제출한 교회는 3월 8일까지 공동의회를 완료하고, 3월 9일(월)까지 공동의회록을 총회사무실 또는 해당 노회로 제출토록 하되, 그 때까지도 미제출 시 본 위원회의 직권으로 임의 배정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⑤ 차기 모임은 3월 12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10) 제10차 회의

☞ 일 시 : 2020. 3. 1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양 측의 중부노회 분립요청 서류를 검토하니, 가칭 함흥노회는 21당회, 가칭 중앙노회는 25당회로 분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다.
- ③ 공동의회 미실시 교회에 대하여는 양측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임의 배정하기로 하다.
- ④ 가칭 중앙노회의 분립예배는 3월 23일(월)에 하기로 하다.
- ⑤ 헤린교회 및 산이리교회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회소송에 대해 해당 판결문을 보고하고, 새하남교회의 합의서 이행에 대해서는 이회근 장로에게 미납된 십일조의 납부 및 공예배 참석을 지시키로 하되, 미이행 시 합의서대로 처리키로 하다.
- ⑥ 위원회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0만원을 추경 청원하기로 하다.
- ⑦ 차기 모임은 4월 23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11) 제11차 회의

㉪ 일 시 : 2020. 3. 1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전산망 명칭 변경, 현 “중부노회(조사처리 중)”을 “중부노회(분립예정)”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② 해린교회 문제는 “최초 합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 ③ 분립예배 비용 정산에 관하여 “합의한 대로” 총회회관 임대료(2,800만원)를 분립 비용으로 각각 양분하기로 하다.
- ④ 산이리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김용제, 이택규 목사가 공동으로 중재하여 합의케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대로” 처분하기로 하다.
- ⑤ 중부노회의 회원명단을 양측이 각각 제공키로 하고, 회의록도 그와 같이 하기로 하다.

12) 제12차 회의

㉪ 일 시 : 2020. 5. 11(월) 7: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산이리교회의 문제는 이택규 목사의 중재로 이수기 목사와 전영균 장로가 만나 화해 합의케 하고, 양측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② 해린교회(김낙주 목사)와 관련된 소송 건에 대하여, 그 소송은 가칭 함흥노회로 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가칭 중앙노회 측에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다. 그러므로 가칭 함흥노회 측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발급키로 하다.
- ③ 차기 모임은 5월 18일(월) 오전 7시,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하다.

13) 제13차 회의

㉪ 일 시 : 2020. 5. 18(월) 7: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산이리교회 이수기 목사와 전영균 장로의 화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청취하다.
- ② 양측 노회 대표(김용제 목사, 이택규 목사)의 중재를 통해 이수기 목사와 전영균 장로의 화해 및 합의를 진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케 하다.
- ③ 합의안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회가 심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④ 다음 모임 장소 및 시간은 서기가 조정하여 추후 통보키로 하다.

14) 제14차 회의

㉪ 일 시 : 2020. 7. 10(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산이리교회 건에 관해서는 김용제 목사와 이택규 목사의 중재를 통해 이수기 목사 및 전영균 장로를 화해케 하여 교회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당회의 절차를 밟아 처리키로 하되, 그 결과를 차기 모임에 보고케 하기로 하다.
- ② 가칭 함흥노회가 요청하는 분립경비 미납금(600만원)에 대해서는 가칭 중앙노회 측에서 신속



히 지급하도록 지시하다.

- ③ 제105회 총회를 위한 본 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은 차기 모임 때 확정하기로 하다.
- ④ 차기 모임은 8월 10일(월)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15) 제15차 회의

☞ 일 시 : 2020. 8. 14(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산이리교회 건은 양측의 보고를 청취한 후 권면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양측 노회의 대표로 하여금 계속하여 중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다. 단, 본 위원회는 산이리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감정 중단하고 양측 노회 대표의 중재 보고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다.
- ③ 소속 노회를 결정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하여 신속히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 노회를 결정하게 하고, 소속 노회 결정 시까지 행정을 중지하기로 하다.
- ④ 조사 보고서 및 청원서를 임시 채용하고 문구 수정은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최종 보고

1.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

제104회 총회결의

- 중부노회장 최규식 씨가 헌의한 총회 지도에 의한 중부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구성하여 조사처리 후 분립하게 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중부노회 조사처리 및 분립 보고

지난 104회기 총회에서 위임한 중부노회 조사 처리 및 분립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조사 결과

제104회 총회가 위임하여 조사하게 한 중부노회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문서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과 더불어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진행했다. 이에 몇 가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1) 분쟁의 시작: 교단 헌법의 엄중함에 대한 무지와 목회적 미숙, 불신

중부노회의 분쟁을 헤린교회의 사건과 더불어 시작된다. 전임(前任) 목사의 소천으로 그 아들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교회 헌법이 정한 바, 만 30세 이상 목사 안수를 하게 하는 규정을 잠재하고 아직 만 30세에 이르지 않은 강도사를 목사로 안수하며, 해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회와 교회가 합의가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새로이 부임한 담임목사와 당회가 갈등을 빚는 등 목회적 미숙함을 보이게 됨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갖게 된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안수가 불법임을 내세워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갔고, 불법당회, 불법적 권징이 노회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분쟁의 발단: 권징 시행의 과도함

헤린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들이 노회에 상소하였으나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총회재판국으로 상소하게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당시 노회장과 노회서기가 의견을 달리함에도 노회서기가 자신에게 접수된 상소장을 총회에 접수하였다. 이에 노회장 측은 서기가 허위문서로 총회에 상소장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노회서기 측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분쟁이 중부노회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노회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노회서기 및 총회총대직을 사퇴케 하고, 3년간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당시 노회 서기도 모르게 임시노회가 개최되었다는 주장에 비추어 노회의 권징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단계에서 무리한 권징보다는 적절한 조화와 화해를 추구했다더라면 헤린교회의 사태가 중부노회의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하고 무리한 권징이 지교회의 사건을 노회의 사건으로 확산시키는 격이 되었고, 중부노회에는 맞고소, 쌍방 간의 질의 공방 및 각종 사법 소송이 줄을 잇게 되었다. 아마도 중부노회가 권징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3) 분쟁의 확산: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의 개입과 혼선

급기야 중부노회의 사건은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헤린교회 당회 판결, 중부노회의 처분을 무효로 확인하고, 헤린교회 담임목사에게 면직, 피고소인 3인에게 각각 1년 징역(설교권 허락)을 예심 판결했으나, 제102회 총회는 이 판결에 대하여 환부 결정을 하였다.

총회에서 환부 판결이 있었으나,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이유로 노회서기 측에서는 노회장 측을 부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하여 정기노회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노회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총회가 환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총회는 이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총회임원회는 중부노회를 사교노회로 간주하여 “노회의 모든 행정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함과 더불어 제102회 총회가 결의한 바, 중부노회 재판 건을 중부노회로 환부하여 재판한 후, 결과를 보고케 하였다. 그러나 환부재판의 통보와 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하였음에도 중부노회가 환부심 재판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상소(노회서기 측)하게 되었다.

총회임원 소위원회는 중부노회를 조사한 후, 노회장 측에 환부심 재판을 시행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 중지를 해제하고, 노회장 측에 대한 상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중부노회 노회장 측에서 기일 내에 환부심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임원회는 노회서기 측(이 모 목사)에게 노회장의 15인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현의부를 거쳐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제102회 총회가 노회로 환부케 한 것에 대하여 총회임원회가 갑작스럽게 개입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총회임원회는 중부노회에 대하여 다시 행정을 중지케 하고, 화합과 수습을 위한 소집만 허락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즉 이 무렵에 새하남교회에서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식이 진행되었고, 노회행정중지를 이유로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총회재판국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개교회의 사건은 총회임원회가 직접 간여할 수 없는 사항이었지만, 노회가 행정 중지된 상태를 이유로 총회가 개 교회의 문제에 직접 간여한 격이다. 이 과정에서 총회 임원회는 화해를 중용하며 수차례에 걸쳐 행정중지, 중지해제, 모든 시벌 원인 무효 등을 합의하고 결정하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이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는 노회의 문제에 총회임원회의 법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간섭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총회임원회와 재판국 간의 엇박자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총회는 계속해서 화해를 중용한다고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상정된 재판 건을 그대로 방기했다. 노회에 사고가 발생했고, 화해와 중재를 위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해당 노회의 재판 건은 잠정 중지해 주어야 한다. 노회에서 재판이 완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하여 고소가 상소의 이름으로 접수되고, 또 총회재판국은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기에 이른다. 물론 총회에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총회임원회와 재판국이 노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제101회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제102회 총회가 이를 환부하였으나 제102회기 재판국(제101회기 재판국원과 동일한 인물)에서는 제101회기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하여 제103회 총회를 통과케 했다. 여기에서는 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은 차치하고라도 총회임원회가 화해 중재를 모색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제102회 총회에서 거부한 판결을 제103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지게 하므로 일종의 기망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도 법적 흠결이 드러난다. 소원 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책별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사람을 피고로 하여 재판하여 판결하는 일 등이다. 이는 권징절차에 증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형태의 법적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중부노회 노회장 측은 즉시 반발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심청원 등의 절차를 밟았으나 이는 총회결의에 반발하는 것이 될 뿐이었다.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직 판결에 따라 총회는 임시소집자를 세워 임시노회를 개최하게 하고, 노회임원을 구성했다. 이 때 노회서기측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노회가 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노회임원은 전 노회장 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임시당회장 파송, 교회대표자 명의 변경 등의 행정처리와 면직 등의 권징을 시행하게 됨으로 노회는 더욱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중부노회의 사태는 총회임원회의 부적절한 개입과 총회재판국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증폭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불법적 금전수수 관련

중부노회 분쟁과 관련하여 총회의 모 인사가 10억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을 요구함은 물론 그에 부응하여 많은 부당한 금전의 지급으로 중부노회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제보들이 있었다. 따라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측 노회의 소명서류, 회계장부, 통장입출금 내역서 등을 확인해 보았으나 구체적인 물증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본 조사처리위원회에게 부여된 조사권으로는 분명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금전수수 문제와 관련한 조사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기로 하였다.

5) 결론

중부노회의 분쟁이 격화된 데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지교회는 물론 노회가 교단 헌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법으로 집행하는 관행들을 원인으로 할 수 있다. 둘째로 목회현장에서 화해와 타협을 이루며 조화와 양보의 미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교회나 노회의 권징에 있어서 권징의 궁극적 목적인 그리스도의 권영의 위함을 망각한 채, 과도한 권징으로 권징에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총회임원회나 재판국 등 주요한 부서가 개 교회 혹은 노회의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성급하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재산으로 보는 인식들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있으나 조사처리위원회가 서류, 증언, 제보 등을 토대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개별적으로 문제의 책임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2. 처리 과정 및 내용

1) 중부노회 문제의 처리에 대한 개괄

중부노회의 분쟁이 교단적으로 큰 문제가 된 데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크고, 만일 본 위원회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면, 중부노회의 문제는 더욱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부노회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 노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목적으로 두고, 총체적인 문제의 난맥상을 합의의 형식으로 풀어가기로 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고,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 일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또 다



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 중부노회와 소속 교회를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부노회의 분쟁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집착하지 않고, 노회를 은혜롭게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2) 양측의 민형사상 소송 취하

(1) 김용제 측(가칭 중앙노회 측)과 최규식 측(가칭 함흥노회 측)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비방하지 않으며 노회 분립을 위해 협력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분립 및 분립예배를 시행했다.

(2) 헤린교회 이탈 측(이바울씨 측)과의 사법 분쟁 중에 있는 헤린교회(김낙주 목사)는 상호간 화해조정을 피하려고 하지만, 헤린교회 이탈 측은 본 위원회의 소환 및 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헤린교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탈 측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총회판결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다만 헤린교회 이탈 측(이바울씨 측)이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1) 헤린교회 잔류 측(김낙주 목사)과의 모든 민형사상의 사법 재판을 취하 또는 종결할 것, (2) 교단의 권징질서를 저버리고 교단을 이탈하여 조사처리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헤린교회 이탈 측(이바울씨 측)이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회개할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교단 재가입을 허락하며, 제103회 총회의 판결에 대한 해별 등은 가입을 청원한 노회의 지도를 받게 하다.

한편 헤린교회 잔류 측(김낙주 목사 측)에 대하여도 사법 재판에서 불법성 여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바, 모든 민형사상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와 관련된 행정을 중지하되, 필요시 총회 임원회의 허락으로 총회소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며, 가칭 함흥노회에 소속하여 지도를 받게 하다.

(3) 산이리교회 당회(이수기 목사과 장로)는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전영균 장로를 면직 시별함으로 교회 갈등이 심화되었고, 중부노회(노회장 최규식 목사 측)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게 되자, 이수기 목사과 장로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 탈퇴(최규식 목사 측이 노회 탈퇴라고 주장함)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노회(당시 노회장 최규식 목사)는 이수기 목사과 관련된 장로들을 면직시키고, 이택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택규 목사는 교회의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였고, 산이리교회와 이수기 목사는 일련의 중부노회(노회장 최규식 목사 측)의 행정을 거부하였으며, 대표자지위확인 등의 사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 본 위원회는 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중재를 시도하며, 사법소송의 취하를 원하는 한편 갈등의 실질적 당사자인 산이리교회 이수기 목사 측과 전영균 장로 측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칭 함흥노회의 이택규 목사와 가칭 중앙노회의 김용제 목사를 중재위원으로 선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산이리교회 관련 모든 행정과 치리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양 측(이수기 목사 측과 전영균 장로 측)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하여 “협의 중재 중”으로 유지하되, 민형사상의 모든 사법소송의 취하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조건으로 노회분립합의에 의거 “원인무효에 의한 원상회복”케 하며, 이미 (가칭)중앙노회와 (가칭)함흥노회로 분립하였으므로 원만한 합의와 중재를 위하여 산이리교회로 하여금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소속노회를 결정하게 하고, 그 소속노회가 이를 지도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노회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산이리교회에 대하여 합의와 관련된 사무 이외에는 일체의 행정을 중지하게 하다.

3) 원인 무효 및 분쟁 전 상태로 원상회복

- (1) 2011년 헤린교회에서 촉발된 중부노회의 사태는 수많은 목사, 장로에 대한 치리, 권징이 시행되었다. 이는 노회장 측(김용제 목사 측)이나, 노회서기 측(이택규 목사 측)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에서 노회서기 측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케 한 반면, 노회장 측에 대하여는 대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판결의 이면에는 권징의 남용, 총회임원회의 행정적 혼선, 제102회기 총회재판국 판결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또 양측 당사자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와 분쟁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합의하였으므로 “피상소인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고 한 것과 “피상소인 정순기, 김진수, 김용제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고 한 것과 “피고 김용제, 김진수, 정순기, 김남덕, 이덕주, 박동규, 박봉규, 박희철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고 한 것과 중부노회 임원들은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원인 무효로 하고, 분쟁 이전의 상태로 신분과 지위 등을 원상회복하게 하다.
- (2) 중부노회 분쟁과 관련하여 제103회 총회에서 판결한 바 “새하남교회 당회는 근신 6개월에 처하고, 추후 위임식은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한다. 피고 은희봉, 최인구 씨는 수찬정지 1년에 처한다”고 한 것과 “박장근 씨 외 장로들은 당회의 근신으로 대신하되, 원로목사 추대식은 근신 처벌이 해별된 후 당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노회 분쟁과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교회의 행사에 제103회 총회의 판결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양측 노회 대표들의 합의는 물론 새하남교회 내부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징계는 원인무효로 하여 분쟁이전으로 원상회복하게 했고, 위임식과 원로목사 추대식에 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하고 재론하지 않기로 하다.

4) 중부노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의 공동계승

중부노회의 양측은 중부노회의 명칭은 어느 누구도 갖지 않게 함과 동시에 제3의 세력이 중부노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합의한 대로 총회 내에서 중부노회의 명칭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부노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은 양측 노회(가칭 함흥노회와 가칭 중부노회)에서 각각 공동 계승하게 하다.

5) 소속 노회 결정의 유보

소속노회를 결정하지 않은 성광교회(장민호 목사)와 아름다운교회(한준택 목사)는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노회를 결정하여 해당노회에 보고하게 하고, 그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이 두 교회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을 중지케 하다.

늘푸른안산교회(없음), 동부중앙교회(김용배), 동심교회(전봉하), 명분교회(김상순), 문화선교교회(백승제), 성지교회(안상배), 초록빛교회(이실영), 성대한교회(왕장철), 양들의교회(이상록), 삼일교회(없음), 여주백합교회(장논산), 열방의빛교회(주요한) 등은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바, 폐교회로 확인하여 처리하다.

3. 분립

중부노회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각각 (가칭) 중앙노회와 (가칭) 함흥노회로 분립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립예배 및 분립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분립노회의 당회조직

가칭 중앙노회는 조직교회 26개 교회(당회), 미조직교회 32개 교회로, 가칭 함흥노회는 조직교회 21개 교회(당회)와 미조직교회 9개 교회로 각각 교단 헌법이 정한 바 합법적인 조직 요건을 갖추었다.

2) 분립예배 및 분립노회

가칭 중앙노회는 2020년 3월 23일, 대광교회에서, 가칭 함흥노회는 2020년 4월 2일 초대중앙교회에서 각각 분립예배 및 분립노회를 개최하였다.

3) 분립노회의 조직

가칭 중앙노회와 가칭 함흥노회의 임원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칭 중앙노회)

노 회 장 : 김용제 목사

부노회장 : 이덕주 목사, 정상모 장로

서 기 : 한상진 목사

회록서기 : 박동규 목사

회 계 : 임동환 장로

부 서 기 : 이봉석 목사

부회록서기 : 김판중 목사

부 회 계 : 문용택 장로

(가칭 함흥노회)

노 회 장 : 김영로 목사

부노회장 : 최용진 목사, 김영복 장로

서 기 : 이택규 목사

회록서기 : 김승호 목사

회 계 : 이종대 장로

부 서 기 : 한윤교 목사

부회록서기 : 이용창 목사

부 회 계 : 손명성 장로

이상으로 증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최종보고를 마칩니다.

2020년 9월

증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위원장 전인식

서기 신현철

[첨부 1]

소(교소)취하 합의서

-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중부노회 김용제 측
-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중부노회 최규식 측

위 당사자 사이의 소(교소)취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아 래

- 1. 각 당사자는 아래 소(교소)를 취하한다.
 - 가. 중부노회장 최규식이 중부노회장 김용제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서울중부지방법원 2019고단3858
 - 나. 중부노회장 최규식이 중부노회장 김용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6152 손해배상(기)
 - 다. 김병선의 11명이 중부노회장 최규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5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5185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노회장 최규식, 이택규가 제기한 재소명형 및 중부노회장 김용제가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727 손해배상(기)
- 2. 각 당사자는 2020. 2. 4.까지 위 소(교소) 취하서를 각 법원(경찰서)에 제출한다.
- 3. 2020. 2. 4.까지 소(교소)취하서를 법원(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본 합의서 제출로 소 또는 교소 취하에 갈음한다.

- 4. 2020. 2. 4.까지 소(교소)취하 및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당 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 5.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0. 1. 31.

당사자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중부노회 김용제, 김병선의 11명

당사자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중부노회 최규식

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조사처리 및 분립위원장 전인식

중부노회 노회 분립을 위한 합의서

- 1. 중부노회 명칭에 대하여는 양측의 조정이 불가하므로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의 직권으로 각각 제3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중부노회 명칭은 총회 산하에서 영구히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2. 양측은 모든 신분, 지위, 자격에 관하여 분쟁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단 탈퇴한 교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된 후, 해당교회의 공동의 결의에 따라 노회로 복귀할 때 신분, 지위 자격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 3.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2020년 2월 4일까지 취하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떤 법지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 단 소송 취하 합의 문은 별지에 의한다.
- 4. 양측은 금일부로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한다.
- 5. 양측의 재산분할과 잔존재산에 대하여는 현 상황대로 종결하여 각각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보증금은 노회분립기금으로 공동사용하기로 한다.
- 6. 두 교회 (해린교회, 삼이리교회)는 노회분립이 완료되기까지 양측 어디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하기로 한다.
- 7. 이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8. 양측은 노회 분립의 과정에서 분립에매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 9. 이 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의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기로 한다.

2020년 1월 31일

최규식 목사 측 대표 최규식 김용제 목사 측 대표 김용제
 김영호 정순경
 이택규 김진수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장 전인식 목사
 서기 신원철 목사
 회계 이병우 장로
 총무 박세형 목사
 위원 정해영 장로

Handwritten signatures and red stamps at the bottom of the document, including the date 2020.1.31 and the name 전인식.



[첨부 2]

1. 가칭 중앙노회 소속 교회 목록

No	교회명	담임교역자	조직/미조직	비고
1	김포솔래	김남덕	조직	
2	대광	김진수	"	
3	더나은	김판중	"	
4	목양	김선구	"	
5	미아중앙	강명구	"	
6	베다니	김병선	"	
7	사랑을심는	이봉석	"	
8	새벽별	김재호	"	
9	새사랑	박상만	"	
10	새하남	최형석	"	
11	성광	박동규	"	
12	양곡소망	이덕주	"	
13	예수비전	김민상	"	
14	예수사랑	조세형	"	
15	예인	장성우	"	
16	은광	박봉규	"	
17	은광	최상배	"	
18	임마누엘	정순기	"	
19	제일사랑	윤희원	"	
20	충성	윤성호	"	
21	튼튼한	손유홍	"	
22	한마음	한상진	"	
23	한샘	이승현	"	
24	한영	김용제	"	
25	해장	전원송	"	
26	거여제일	박희철	"	
27	광명	이병조	미조직	
28	광주새생명	정준영	"	
29	금곡	김길삼	"	
30	꿈이있는	최시용	"	가명(최다니엘) 사용
31	동행	정영수	"	
32	마도	김홍윤	"	
33	무지개	함건영	"	
34	미문	정봉호	"	

No	교회명	담임교역자	조직/미조직	비고
35	믿음	임덕규	"	
36	사랑의	이정래	"	
37	산돌	정희섭	"	
38	새빛		"	총회전산 미등록
39	새생명	박인	"	
40	서로사랑	이봉섭	"	
41	서울반석	안현준	"	
42	성주로	김제갑	미조직	
43	세계비전	장성익	"	
44	수지새생명	장우천	"	
45	안산중앙	유호문	"	
46	언약	강대원	"	
47	열린중앙	박정식	"	
48	영광	이계원	"	
49	예그림	전봉하	"	
50	오병이어	한춘근	"	
51	은혜의강	유근재	"	
52	조이플	김형운	"	
53	즐거운	김성복	"	
54	참좋은	조승현	"	
55	친한	이문오	"	
56	하늘소망	강은수	"	
57	화평	김명섭	"	
58	흑산제일	이지환	"	

2. 가칭 함흥노회 소속 교회 목록

No	교회명	담임교역자	조직/미조직	비고
1	가남반석	류정열	조직	
2	강동제일	최신영	"	
3	남부제일	이대우	"	
4	대축	장경덕	"	
5	드림	김승호	"	
6	목양(A)	김영로	"	
7	반석	김요셉	"	
8	비전꿈의	남창욱	"	
9	신창제일	이석진	"	



No	교회명	담임교역자	조직/미조직	비고
10	아현	차창모	"	
11	영광	최규식	"	
12	예수사랑	이택규	"	
13	주능력	한동진	"	
14	주평강	한윤교	"	
15	찬양	최용진	"	
16	초대중앙	최창기	"	가명(최요한) 사용
17	초원	노병균	"	
18	풍성	이영옥	"	
19	새언약	윤두환	"	
20	행복한	김성진	"	
21	헤브론	장종성	"	
22	헤린교회	김낙주	"	
23	갈릴리	임형순	미조직	
24	군산은성	안종문	"	
25	군포중앙	임명철	미조직	
26	노아		"	총회전산 미등록
27	생명길라이프로드		"	"
28	서울미문	박진주	"	
29	성심	문성환	"	
30	소망	변행선	"	
31	아름다운만남	김일우	"	
32	예수사랑	송성훈	"	
33	벧엘		"	
34	시온	이구식	"	
35	주님		"	
36	노고산	이광오	"	
37	사랑으로소문난	김순겸	"	
38	새은혜	한명희	"	
39	수영제일	이충길	"	

3. 배정 유보 교회 목록

No	교회명	담임교역자	조직/미조직	비고
1	성광	장민호	조직	
2	아름다운	한준택	"	
3	산이리교회	이수기	"	
4	늘푸른안산		미조직	현재 폐교회 상태

No	교회명	담임교역자	조직/미조직	비고
5	동부중앙	김용배	미조직	현재 폐교회 상태
6	동심	전봉하	"	"
7	명분	김상순	"	"
8	문화선교	백승제	"	"
9	성지	안상배	"	"
10	초록빛	이실영	"	"
11	성대한	왕장철	"	"
12	양들의	이상록	"	"
13	삼일		"	"
14	여주백합	장논산	"	"
15	열방의빛	주요한	"	"